

인천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832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2. 11. 30.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3. 16. 접수 제1258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소외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1. 같은 일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20. 3. 16. 같은 일자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소장에 첨부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 등 채무자 C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C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악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 3. 23. 2015가단25508호 판결에 따라 7,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후 C와 피고 사이에서 2020. 3. 1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인 C의 처분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20. 3. 16. C가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커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자신이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C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법리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70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6. C에게 월 2%의 약정이율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C의 변제 자력의 정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정도의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는 C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별지